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만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99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임만균, 김원태, 남창진,
박승진, 박유진, 박중화,
박춘선, 박철성, 봉양순,
서준오, 왕정순, 이영실,
한 신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들을 우대하고, 경로자 우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측면에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(체육시설) 이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, 영유아 및 노인,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, 국가유공자법 , 독립유공자법 , 참전유공자법 , 의사상자법 , 노인복지법 , 장애인복지법 , 국민기초생활법 등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“미만의 사람, 65세 이상의”를 “미만 또는 65세 이상인”으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”를 “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
4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11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별표 2 제1호 중 “체육시설”을 “운동시설”로 하고, 같은 호 공통 국국장의 비고란 중 “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30% 할인”을 삭제하고, “청소년·어린이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.”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	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6세 미만 ^의 사람, 65세 이상 ^의 사람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	2. --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--- ----- ----- ----- 1명 -----
3. ~ 16. (생략)	3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〈신설〉	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	1.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	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
제1항 각 호의 사람
4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
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
사람
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
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
해당하는 사람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
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
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람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
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
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사람
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
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
58조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
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
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
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
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③ (생 략)

11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20조(요금의 감면) 제3항	○	·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로 세입감소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항 신설에 따른 세입감소(안 제5조의2, 별표3)

나. 전제

- 감면율은 다른 조례상 감면율¹⁾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비율인 50%로 설정함
- 서울시 공원에 체육시설별 이용현황²⁾ 및 이용료 감면에 따른 수혜자를 추산하기 어려운 바 유사 사례(서울식물원 입장료)를 참조하여 대략적인 비용 산출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6년~2030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관련부서(정원도시정책과, 정보시스템과, 서울식물원) 제공자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≒ 50,927,425천원(연평균 10,185,485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세입감소	10,185,485	10,185,485	10,185,485	10,185,485	10,185,485	50,927,425
소계(a)	10,185,485	10,185,485	10,185,485	10,185,485	10,185,485	50,927,425

4. 덧붙이는 의견

- 본 추계액은 유사사례 1건(서울식물원 입장료)을 참조하여 산출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 의해 해당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세입감소액이 달라질 수 있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

1) 「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따르면 물재생시설 관련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의 감면율은 약 50%임

2)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은 '24년 기준 총 111개소로 그 중 17개소(약 15%)만이 현재 <서울시 공공예약 시스템>을 이용하여 예약을 받고 있어 관련 통계자료 파악이 곤란함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 상세내역

○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세입감소액 : 연간 약 10,185,485천원 감소

- 산식 : '24년 기준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 세입금 총액³⁾ x 연 감면액 비율⁴⁾

= 약 37,724,019천원 x 0.27

= 약 10,185,485천원

3) '24년 서울시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세입금 총액(111개소) : 약 37,724,019천원

4) 서울식물원 입장료 감면대상은 본 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대상과 거의 유사하며, 2024년 기준 서울식물원 입장료 할인액 총합은 1,037,607천원으로 입장료 총합(1,934,265천원) 대비 약 54% 정도로 파악됨. 다만, 서울식물원의 경우 감면율이 100%이므로 본 조례안의 감면율이 50%임을 감안할 때 위 비율(54%)의 절반인 27%를 '유사사례 연 감면액 비율'로서 산식에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<'24년 서울식물원 입장료 면제 현황(2024년)> ※영유아는 어린이 요금(2,000원) 적용, 그 외는 성인 요금(5,000원) 적용

면제대상	65세 이상	영유아	유공자	기초수급자	다둥이	장애인	병역명문가 등	계
비율(%)	51	25	2	0.2	13	9	0.1	100%
인원(명)	124,019	60,196	4,211	596	31,445	22,860	312	243,639
면제금액(천원)	620,095	120,392	21,055	2,980	157,225	114,300	1,560	1,037,607